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22 발의연월일: 2022. 4. 6.

발 의 자:이원택・신정훈・김정호

위성곤 • 주철현 • 송재호

최인호 • 유정주 • 서삼석

장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양잠이란 일반적으로 뽕잎을 먹이로 누에를 사육하여 고치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나, 현행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을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누에, 뽕나무 등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뽕나무에서 오디나 뽕잎을 판매 목적으로 수확하는 것이 기능성 양잠산업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꾸지뽕나무의 포함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함.

또한 유통업을 관련 산업에 포함하여 양잠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아울러 양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농림축산식품 부훈령인 「누에 장려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에 대한 법적 근거 마 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잠산업의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고, 누에장려품종의 육성, 잠 업인의 날 지정, 해외진출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기능성 양잠산 업을 육성·발전시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뽕나무에 꾸지뽕나무를 포함하고, 기능성 양잠산업에 오디나 뽕잎의 생산도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며, 양잠산물 등의 도매·소매, 보관·배송·포장, 관련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기능성 양장산업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추 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매년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 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누에장려 품종의 육성 및 우량누에씨의 생산·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 행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 신설).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연구소·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3 신설).
- 마.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 잠산업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잠업인의 날로 정함(제9조의4 신설).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

하여 양잠산물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5 신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뽕나무"를 "뽕나무(꾸지뽕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산물"을 "산물(오디 및 뽕잎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생산(가공을 포함한다)하는"을 "생산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 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가목에 따른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이나 나목에 따른 식품·소재 등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산업
- 라. 그 밖에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제3조제1항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방안
- 제5조제3항 중 "종합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 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⑦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⑨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 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누에장려품종의 육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에장려품 종의 육성 및 우량누에씨의 생산·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 제9조의3(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 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기능성 양잠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운영 및 지정철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4(잠업인의 날) ①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이하 "잠업인"이라 한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잠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잠업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5(해외진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양잠산물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중 "제41조"를 "제40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기능성 양잠산업"이란 다음	1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	가
는 식품・소재 등에 사용	
하기 위하여 누에, <u>뽕나무</u> ,	
누에고치, 그 밖에 대통령	(꾸지뽕나무를 포함한다.
령으로 정하는 <u>산물</u> 또는	<u>이하 같다)산물(오</u>
그 각각의 부산물을 생산	디 및 뽕잎을 포함한다. 이
(가공을 <u>포함한다</u>)하는 산	<u>하 같다)</u> <u>포함한다. 이</u>
어 님	<u>하 이 조에서 같다</u>
나.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로부터 인체에 유용	
한 효과를 주는 식품・소	
재 등을 생산(가공을 포함	<u>생산하는</u>
<u>한다)하는</u> 산업	
<u><신 설></u>	다. 가목에 따른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이나 나
	목에 따른 식품・소재 등
	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

<신 설>

2. (생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 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 6. (생 략)

<신 설>

7. (생략)

③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영하기 위한 보관・배송・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

 으로 하는 산업

라. 그 밖에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 과 같음)

② -----

1. ~ 6. (현행과 같음)

7.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방안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

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계획	

-----.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 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 ⑤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시행 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

<신 설>

<신 설>

<신 설>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누에장려품종의 육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 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에장려품종의 육성 및 우량누에씨의 생산·공급에 관 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 다.

제9조의3(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 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대학, 기능성 양잠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 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 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 문인력 양성기관이 제5항에 따 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철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 여야 한다.
-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운영 및 지정철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잠업인의 날) ①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 산업 종사자(이하 "잠업인"이라

<신 설>

<신 설>

제10조(기능성 양잠농가의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육성·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능성 양잠농가로 하여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1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양잠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한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잠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잠업인의 날의 취지
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5(해외진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
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
기 위하여 양잠산물을 수출하
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기능성 양잠농가의 관리
<u>ㄷ</u>)
제40조